

제 1532 호
1990. 12. 2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공문시행	
물품관리권환소요조회	3
● 조 례	
제2874호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4
● 고 시	
제 411 호 도시공원시설의관리위탁광고및사용료고시	7
제 415 호 도시계획사업(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변경허가	7
제 416 호 서울중계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8

(이면계속)

영																			
관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422

● 공 고

제 615 호 도시계획사업(하천복개)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8

● 구 고 시

제 2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변경인가 (서대문) 11

제 4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은평) 14

제 5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송파) 15

제 52 호 민영주택건설사업연경승인 (송파) 15

● 구 공 고

제 104 호 전문건설업양도승인 (영등포) 16

제 200 호 사당2-2구역주택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동작) 16

● 사 령

● 휘 보

공 문 시 행

서울특별시

심사01754-170

(731-6536)

1990. 12. 19

수 신 : 수신처참조

제 목 : 물품관리전환 소요 조희

1.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를 조희하니 희망부서는 '90.12.31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람에 기한내 요청이 없을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하겠습니다.

가. 관리전환물품목록

물품분류번호	품 명	단 위	규 격	수 량	금 액	물품상태
7430-025	자동문서 작성기	조	QW 1,000mm	1	9,900원	정비요
7110-005 -3003	철제외자	각	3A	1	32,500	중고
7110-005 -3004	"	"	3B	1	26,316	"
7110-005 -3005	"	"	4종	4	37,644	"

서울특별시장

(심사분석담당관전결)

수신처 : 시산하전기관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농지 전용업무처리심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18

서울특별시시장 고 건 ㉞

●서울특별시조례제2674호

서울특별시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지전용업무의 처리에 있어 세부적인 기준과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보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전용업무 추진상의 원칙) 농지 전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1. 농업생산 목적을 하지 아니하는 전용목적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의 전용은 이를 억제한다.
2.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의 전용과 농지만을 이용하여 전용목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농지의 전용이 부득이한 경우 그 전용 허용면적은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한다.
4. 전용목적 시설의 설치로 부근 농지의 보전과 영농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도 농지의 전용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농지전용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지역사

회의 개발, 공용·공공용 목적사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농지전용허용 면적) 농지에 전용목적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이 부득이한 경우 그 전용허용면적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부지면적에 공용, 공공용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1의 전용허용면적 비율을 곱한 면적으로 하고, 공용·공공용 시설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2의 전용허용면적 비율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농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상대농지 또는 농업진흥 지역밖의 농지는 5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시설용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장이 입지여건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4조(농지전용 협의등의 신청)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요청서를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지적
2. 전용목적 및 전용사유
3. 예산조치내용

<p>4. 전용시기</p> <p>②제1항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개요서 2. 시설계획 약도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지적도 및 지형도 <p>제5조(농지전용 협의등의 심사기준) 구청장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되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서(이하"심사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할청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요청서에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할청이 농림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류에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용협의대상 적합여부 2. 전용허용면적비율에의 적합여부 3. 전용목적의 실현성 4.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면적 5.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부근 농지보전에 미치는 영향 6. 부근농지의 일조·통풍·통작등에 미치는 영향 7. 전용의 목적사업이 취수 또는 배수물 요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시기, 방법, 수량, 수질등으로 보아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8. 전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부근농지 또는 농지개발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거나 전용의 목적사업이 농수산 	<p>업에 유해한 가스·분진·악취·배수등을 발생시키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방제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개발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부근 농지의 농업생산조건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대체시설의 설치계획 10.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인지의 여부와 농업진흥지역안의 적용도구역별 토지이용허용행위 인지의 여부 <p>제6조(농지잠식요인등의 사전방지) 시장 또는 구청장은 농지잠식요인 또는 영농장애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용목적시설을 집단화된 농지의 중심부분에 설치하거나 집단화된 농지에 인접하여 설치하기 위한 농지의 전용은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다만, 집단화된 농지에 인접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제방·구거·하천등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경계로 하여 전용을 허용하여야 한다.</p> <p>제7조(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합리적인 농지보전정책을 추진하고,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등의 또는 승인을 할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조성·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서울특별시 농지전용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p>
---	---

<p>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의 농지보전시책 추진방향의 설정 2. 시장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농지전용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2일전에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의사항과 관련된 부서의 담당자를</p>	<p>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한 농지전용신청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역제지침제정을 위한 준칙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p>
--	---

[별표 1]

**공공·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허용허용면적비율(제3조관련)**

전 용 대 상 시 설	전 용 허 용 면 적 비 율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군사시설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상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밖의 농지 2. 학교시설·예비군후련장·관공서등의 공용청사 또는 관광시설(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것에 한한다) 3. 공공주택건설용지·정부계획에 의한 공업단지 또는 새마을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부지 4. 도로·철도·공항·항만·국토보존시 설·담수물지·정수장·하수처리장·쓰 레기처리장·분뇨처리장 또는 산업폐기 물 처리장 5. 기타의 공공·공공용시설 	<p>30퍼센트 이내</p> <p>100퍼센트 이내</p> <p>50퍼센트 이내</p> <p>70퍼센트 이내</p> <p>100퍼센트 이내</p> <p>40퍼센트 이내</p>	<p>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허용면적비율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전용을 허용한다.</p>

[별표 2] 공용·공공용 시설외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시 전용허용면적비율(제3조관련)		
전 용 대 상 시 설	전 용 허 용 면 적 비 율	비 고
1. 관광시설	40퍼센트이내	절대농지 또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는 허용면적비율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전용을 허용한다.
2. 고아원·양노원·병원등의 공익시설, 국민주택, 광업시설, 주유소, 휴게소, 버 스정류장등 도로이용시설 또는 자동차운 전 수련시설	50퍼센트이내	
3. 공장시설, 비농가용 농수산물창고, 농 어촌특산물 생산단지시설, 사도법에 의 한 도로	70퍼센트이내	
4. 어패류 양식시설 및 건조시설등의 어 업용시설	70퍼센트이내	
5. 농가주택 및 농업용시설, 마을회관등의 공동이용시설	100퍼센트이내	
6. 기타 시설	30퍼센트이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고 시</div>		
<p>●서울특별시고시제411호</p> <p>도시공원시설의관리위탁공고및사용료</p> <p>도시공원법 제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도 시공원시설(주차장)을 관리위탁함을 공고 하고 서울특별시공원조례제6조(별표2)의 규 정에 의거 그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 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2.</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주차장 위치: ○문래근린공원(영등포구 문래동3가 599-7, 문래역)</p>		<p>-면적: 1,188㎡, 주차대수: 50대</p> <p>○남산자연공원(중구 남대문로5가 215의, 야외공장)</p> <p>-면적: 3,200㎡, 주차대수: 189대</p> <p>○관악산자연공원(관악구 신림동30-1, 신림계곡입구)</p> <p>-면적: 8,134㎡, 주차대수: 451대</p> <p>2. 위탁 관리자: 서울시설관리공단</p> <p>3. 주 차 요 금: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공영주 차장 요금으로 함.</p> <p>●서울특별시고시제415호</p> <p>도시계획사업(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변경허가</p>

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4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변경허가 하였고 도시계획법 제2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주차계획담당관실 및 서초구청 도시경비과에 각각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19

서울특별시

- 가. 사업시행지: 변경사항 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변동사항 없음.
 - 사업의 명칭: 변경사항 없음.
- 다. 사업시행규모
 - 부지 면적: 변경사항 없음.
 - 건물연면적: 변경사항 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변경사항 없음.
 - 성 명: 변경사항 없음.
- 마. 사업시행기간
 - 착공년월일: 변경사항 없음.
 - 준공년월일: 변경전-'90.12.31
 변경후-'91.12.31
- 바.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생략
- 사. 공사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416호

서울중계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서울 중계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1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거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2.

서울특별시

다 음

- 실시계획 기간변경

- 기 정: 1986. 4. 1-1990.12.31
- 변 경: 1986. 4. 1-1991. 6.30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615호

도시계획사업(하천복개)실시계획변경인가를위한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451호(89.10.11)호로 도시계획 시설결정되고 서초구 고시 제11호(90.9.13) 시력승인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182호(90.6.15)로 실시계획인가된 사당천 복개공사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에게 보입니다.
 2. 관계도서는 아래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 공람장소: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 토목2부 (362-3656-7)
 서초구청 건설관리과 (570-6401)
 - 나. 공람기간: 1990.12.20-1991. 1. 3까지
1990. 12. 20
- 서울특별시
- 공람 개요
 -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방배동 430외3-8,1번지간 하천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사업(하천)
 - 명칭: 사당천 복개공사
 - 다.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청
 - 라. 시행면적: 폭 25-30m, 연장 870m,
 면적 22,417㎡
 - 마. 시행기간: 인가일-1991.4.30
 - 바. 변경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변경이 되는 토지조서 (수용합 토지조서)

번호	소 개 지		지목	지적(㎡)	권 입 면 적				소 유 자		비고
	구 동	번 지			영 구 (㎡)		일 시 (㎡)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1	서초구 방배동	686.152	구	1,580	1,123	1,580	181	-		무 유 지	
2	"	387.11	전	86	26	86	38	-		서울특별시	
3	"	387.15	"	93	-	93	8	-	성북구 동선동 1가 1-2	김 규 순	
4	"	388.5	답	496	83	496	210	-	서초구 방배동 1-11	조 봉 구	
5	"	389.1	전	1,418	740	1,418	263	-		서울특별시	
6	"	819.34	도	8,624	-	-	48	-		"	제외1
7	"	390.2	답	615	470	615	138	-		"	
8	"	829.3	대	184.9	-	-	2	-	서초구 방배동 90.7	김 달 통	제외2
9	"	828.1	"	327	-	-	33	-	서초구 방배동 828.1	유 정 애	" 3
10	"	828.3	"	18.2	-	-	24	-	마포구 아현동 618.4	김 부 지	" 4
11	"	828.8	"	176.1	-	-	18	-	서초구 잠원동 130.1	최 병 관	" 5
12	"	686.41	구	1,332	939	1,322	181	-		무 유 지	

제1532호 시

1990. 12. 20

29-9

1126

번호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소유자		비고
	구	동			영구(㎡)		일시(㎡)		주소	성명	
					담초	변경	담초	변경			
13	서초구	방배동	대	168.7	-	-	2	-	서초구 방배동 390.3	김해웅	제외6
14	"		천	1,547	951	1,547	391	-		국유지	
15	"		천	952	340	952	170	-		서울특별시	
16	"		구	1,438	1,107	1,438	261	-		국유지	
17	"		답	218	117	218	62	-		서울특별시	
18	"		천	6,719.8	4,369	6,719.8	1,225	-		"	
19	"		도	2,539.2	-	-	17	-		"	제외7
20	"		구	147.8	-	-	46	-		"	" 8
21	"		구	224.9	-	-	33	-		"	" 9
22	"		도	150.2	-	-	75	-		"	" 10
23	"		답	4,043	49	-	150	-	중구 태평로2가 305	중앙산업(주)	" 11
24	"		천	7,254.4	6,199	7,254.4	504	-		서울특별시	
	계				16,627	22,417.2	4,080	-			

29-10 제1532호 시

보 1990. 12. 20

구 고 시

◎서대문구 고시 제22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변경 인가

1. '64. 7. 8 구획지구 완료지구 서울시공고 제360호로 환지처분된 서대문구 북아현동

236-237간 도시계획법 제2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 공고 제28호('90. 5. 16)로 인가된 도시계획 사업용,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2.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번 호	사업의 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명칭	사업의 규모
서대문구 공고제28호 (변동없음)	서대문구 북아현동 236- 237간 (변동없음)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변동없음)	북아현동 236- 237간 도로개설 공사 (변동없음)	도로 : B=8m, L=110m D=600%, L=110m (변동없음)

가. 사업의 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92. 12. 30
다. 건물 소재지, 면적, 소유권 이외의 권

리명세서, 당초생략 변경사항, 별첨조서 참조
라. 건물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조서참조

건 물 조 서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건축 면적 (㎡)	수용 면적 (㎡)	소유자		관계자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	북아현동 240-37	목조와급	주택 근린생활시설	99.2	8.5	북아현동 240-37	홍대석			
2	북아현동 249-36	목조와급	주택	57	1.2	북아현동 240-36	홍대석			
3	북아현동 240-35	목조와급	근린생활시설	34.1	4.9	북아현동 240-35 (한금순)	김익열			
4	북아현동 236-45	목조와급	주택	계 : 82.8 1층 : 41.4 2층 : 41.4	계 7.2 1층 3.6 2층 3.6	북아현동 236-45	김예경			
5	북아현동 236-31	시멘트벽 시멘트와급	주택	37.4	28.4	북아현동 236-31	김선호			

구분	소재지 지번	구 조	용 도	건 축 면적 (㎡)	수 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관리처명	
6	북아현동 236-30	·시엔트브릭	·주택	20.1	12.5	북아현동 236-30	이상욱				
7	북아현동 236-9	·시엔트와콤 ·목조와콤	·주택	53.8	18.6	북아현동 236-9	이형진				
8	북아현동 236-9	·목조와콤 ·스래브 ·시엔트브릭	·주택	34.6	18.2	북아현동 236-9	안명래				
9	북아현동 236-9	·시엔트브릭 ·스래브지붕	·확장실	5.8	4.0	북아현동 236-9	이대용 조금아 김장환 김길수				
10	북아현동 236-9	·시엔트브릭 ·시엔트와콤 ·스래브	·주택	27.0	17.2	북아현동 236-9	이대용				
11	북아현동 236-9	·스래브 ·시엔트브릭 ·시엔트와콤	·주택	29.6	14.8	북아현동 236-9	이동수				
1	북아현동 236-8	·기와시엔 ·브릭	·주택	51.4	20.4	북아현동 236-8	서병호				
13	북아현동 236-8	·목조스래브	·근린 생활	계 23.8	계 23.8	북아현동 236-8	이교순				
				1층 11.9	1층 11.9						
				2층 11.9	2층 11.9						
14	북아현동 236-7	·목조시엔 ·브릭 ·기와, ·스래브	·근린 생활 ·주택	70.7	39.5	북아현동 236-7	이재철				
15	북아현동 237-1	·기와스래브	·주택	39.7	22.2	북아현동 237-1	최윤배				
16	북아현동 237-5	·목조 ·시엔트와콤	·주택	24.54		북아현동 237-5	김장환				
17	북아현동 237-6	·목조 ·시엔트와콤	·주택	18.7	2.4	북아현동 237-6	김시무				

구분	소재지	구 조	용 도	건 축 면적 (㎡)	수 용 적 (㎡)	소 유 자		관 계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8	북아현동 237-9	·기와목조 ·연화조	·주택	19.2	3.2	북아현동 237-9	김태식			
19	북아현동 237-10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와즙	·주택	30.2	3.4	북아현동 237-10	박태식			
20	북아현동 237-11	·시멘트벽 ·시멘트와즙	·주택	35.6	7.9	북아현동 237-11	김갈수			
21	북아현동 237-13	·기와, ·스라브 ·시멘트벽	·주택	28.7	5.0	북아현동 237-13	이재식			
22	북아현동 237-14	·기와 ·시멘트벽	·주택	26.3	4.3	북아현동 237-14	이문조			
23	북아현동 237-15	·목조와즙	·주택	40.3	계 19.8 1층 12.6 2층 7.2	북아현동 237-15	김진부			
24	북아현동 237-16	·기와, ·연화조	·주택	19.4	12.0	북아현동 237-16	김노진			
25	북아현동 237-17	·기와 ·시멘트벽	·주택	31.4	8.6	북아현동 237-17	박갈수			
26	북아현동 237-48	·기와, ·연화조 ·시멘트벽	·주택	29.7	6.2	북아현동 237-48	유충명			
27	북아현동 237-49	·기와, ·시멘트벽	·주택	20.9	2.8	북아현동 237-49	김태용			
28	북아현동 237-50	·연화조 ·평옥개	·주택	계 82.2 1층 41.1 2층 41.1	계 2.6 1층 1.3 2층 1.3	강서구 내발산동 714신안 연립A동 105호	박충규 최도일			
29	북아현동 237-86	·목조와즙	·근린상 ·활시설	34.0	5.6	북아현동 237-86	신동길			
30	북아현동 237-72	·목조와즙	·주택	24.9	3.6	북아현동 237-72	장세진			
31	북아현동 237-83	·시멘트벽 ·시멘트기와	·점포	19.83 4.0	2.5 2.0	북아현동 237-83	장세진			
32	북아현동 237-73	·목조와즙 ·시멘트벽	·근린상 ·활시설 ·주택	20.37	8.6	북아현동 237-73	이용희			
33	북아현동 236-46	·스라브시 ·멘트벽 ·시멘트기와	·근린상 ·활시설 ·주택	42.97	3.20	북아현동 236-9	노현숙			

●은평구고시제4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5(‘70.6.22)호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진관내동-지축리간 도로확장공사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서울) 은평구 고시 공고 제20호(‘90. 2. 3)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거 은평구 고시 제13호(‘90. 2.21)로 실시계획 인가된 고시사항중 관계인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합니다.

1990. 12. 14
은 평 구 청 장 인

물 건 조 서

- 아 래 -

가. 사업시행지 : 은평구 진관내동410의 8-410의6간

나. 사업의 종류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진관내동-지축리간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로확장
E=20m, L=160m, A=32a

라. 사업의 시행자 : 은평구청장

마.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91.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별첨

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변경내용 : 관계인 추가 (1건)
: 물건조서 (각종 지장물)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 제 이용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진관내동 410-6	비닐하우스 진 열 대 화분 (대) 화분 (중) 화분 (소)	0.9×0.8×2.8m	49㎡ 1 식 50개 200개 350개	화 원 김영규	진관내동 413-27				
2	진관내동 410-6	비닐하우스 진 열 대 지 하 모 타 화분 (대) 화분 (중) 화분 (소)	0.8×1.1×4.0m	59㎡ 1 식 1 식 80개 450개 500개	화 원 장재명	경기 고양 신 도읍 지축2리 496-28				

토 지 조 서											
일련 번호	소재지 번	지번 번호	지적 (㎡)	면적 (㎡)	토지 등급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진관내동	대지	422	422			이재원	동작구 사당동44- 108	국(과주 세무서)		소유권외의권 리의종류및내용 공유자전원 입 류
									김정숙		소유권일부담 소액고등기 (지분52분지 12)
									주식회사 서울상호 신용금고	서울강남 구 신사동 514-2	근저당권

◎송파구고시제51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12. 13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1. 사업명 : 마천동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마천동지역 주택조합
대표 송 태 칸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가. 위치 : 송파구 마천동9번지의 1필지
나. 대지면적 : 3,561.60㎡
다. 용도및규모 : 아파트 10~16층 1동 1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면적 : 13,282.25㎡

4. 사업시행기간 : 1990. 12 ~ 1991. 12

◎송파구고시제52호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 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 12. 13

송 파 구 청 장

- 다 음 -

1. 사업명 : 송파구 풍납동340번지의 2필지
2. 사업주체 : 풍납동 현대아파트 직장주택조합의 8개 조합
3. 사업시행 : 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구분	변경전	변경후
위치	송파구 풍납동 340번지의 2	좌동
대지면적	27,038.40㎡	26,953.70㎡
건축면적	77,536.99㎡	좌동
규모	지하 1층, 지상 20층 6개동 708세대	좌동
용도	아파트 및 부대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89.11~1991.6.30

구 공 고

◎영등포구공고제104호

전문건설업 양도 인가

건설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시행령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0. 12.

영 등 포 구 정 장 인

인가일자	양도업종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0.12.14	철물공사업 (83-11-341) 설비공사업 (83-12-502)	영신공사	영등포구 당산6가345-4	박제순	(주)영신단열 공 사	영등포구 당산6가345-4	박제순

◎동작구공고제200호

사당2-2구역주택개량재개발사업공사완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75호('87. 4.23)로 사업시행인가되고, 같은 고시 제36호('89. 1.23) 및 동작구 고시 제16호('90.7.24)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사당 2-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1990. 12. 14

동 작 구 정 장

- 다 음 -

가. 사업명칭 : 사당2-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나. 시 행 자 : 사당2-2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조합 조합장 김 태 흥
 다. 시행기간 : '87. 4.23 - '90. 8. 7
 라.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공중널 공사시행 내역

1) 건축시설 : 아파트 15층 12동, 1.152세대 - 건축면적 : 11,012.112㎡ - 건축연면적 : 143,487.302㎡	- 단지도로포장 : 240a - 놀이시설 : 4개소 1,695.48㎡ - 주차시설 및 기타부속시설
2) 부대시설 - 조경면적 : 15,038㎡	마. 사업비 : 53,870,431천원(제한별내역 상략)

사 령

◎1990년 12월 15일자 5급 공무원 진보 명 제121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이동처
고동수	보건위생과 위생감시계장	마포구	지방행정사무관
고인석	도로계획과 시설계획계장	중앙하수처리장	지방토목기사
김승원	중앙하수처리장 수처리과장	도로계획과	"
김윤진	서초구	한상동원관리사업소	지방임업기사
이홍수	한강공원관리사업소	서로구	"
최용호	공원과 공원개발계장	생활체육과	"

◎1990년 12월 17일자 7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신규임용 명 제125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신규임용
이수범	기술심사담당판 3호봉	지방토목기사보시보	신규임용
허상문	시설계획과 3호봉	"	"
김준형	도시개발과 3호봉	"	"
강계인	주먹계량과 2호봉	"	"
천정남	하수처리과 3호봉	"	"
김남석	총무과 3호봉	지방농신기원보시보	"

◎1990년 12월 14일자		9급공무원 전출			령 제42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박민규	경상남도 전출을 명함.	성북구	지방행정서기보		
◎1990년 12월 17일자		지방별정직 7급상당 공무원 의원권직			령 제42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	급	
강미경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립부녀보호소	지방별정직7급상당		
◎1990년 12월 17일자		7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령 제42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고보영	전자계산소	운영과	1호봉	지방전산처리사보시보	신규
우정숙	"	"	"	"	"
이정임	"	"	"	"	"
김기항	"	"	"	"	"
이창희	"	"	"	"	"
유성옥	"	"	"	"	"
정한호	"	"	3호봉	"	"
한정우	"	"	"	"	"
서천식	"	"	2호봉	"	"
송정아	"	"	1호봉	지방전산처리원보시보	"
유정심	"	"	"	"	"
서해연	"	"	"	"	"
조연순	"	"	"	"	"
이희옥	"	"	"	"	"
김광숙	"	"	"	"	"
김신숙	"	"	"	"	"
김경아	"	"	"	"	"

◎1990년 12월 17일자		기술직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령 제429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한대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소청90-119, '90. 12. 10)에 따라 1990. 6. 30 견책처분을 동일자로 취소함	공원과	지방임업기사		
◎1990년 12월 20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진보		령 제430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석남	용산구	서초구	지방보건기사		
신용정	서초구	은평구	"		
김형기	양천구	영등포구	지방보건기사보		
전철수	강남구	성동구	"		
이인선	성동구	중랑구	"		
이복순	영등포구	강남구	"		
서정권	도봉구	중구	"		
김만혜	은평구	마포구	"		
모옥순	동작구	관악구	"		
구봉순	중구	강서구	"		
정계숙	양천구	강도구	지방보건기원		
김은종	강서구	동작구	"		
정병석	구로구	서초구	"		
김정석	동작구	양천구	"		
남정선	영등포구	동작구	"		
박경오	관악구	서초구	"		
강부남	"	"	"		
김현자	서초구	구로구	"		
조명자	"	관악구	"		
강대원	"	강동구	"		
김용순	강동구	강남구	"		
강분종	강서구	중랑구	"		
김정곤	"	강동구	"		
강성규	강동구	서초구	"		
황인숙	강서구	양천구	지방보건기원보		
김부경	강남구	서초구	"		
양맹	강성북구	중랑구	"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정수	은평구	강서구	지방보건기원보
김경순	양천구	관악구	"
문점순	구로구	양천구	"
장진섭	중구	서초구	"
최승혜	관악구	"	"
연훈	송파구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수의사
고용만	보건환경연구원	송파구	"
승원우	종로구	성동구	지방수의사보
이담주	성동구	보건환경연구원	"
김윤기	서대문구	강서구	"
강영일	강서구	서대문구	"
이재신	"	보건환경연구원	"
이주형	송파구	"	"
김종열	강동구	종로구	"
나인택	보건환경연구원	송파구	"
김선홍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강동구	"
강영조	"	양천구	지방축산기사보

단기해외연수 파견 명령

가. 해외연수 대상자

소속	직명	성명	연령	학력	계약년월일
문화과	지방전문직 "마"호	김광섭	36	전문대졸	'88. 7. 8

나. 연수기관: 일본 동경예술대학(보존과학연구소)

다. 연수기간: '90. 12. 20 - '91. 6. 15 (5개월 27일)

라. 연수분야: 미술작품의 과학적인 보존관리와 제반미술품 수복 기술연구

마. 연수비: 재단법인 일한 문화교류기금 부담

서울특별시장

회 보

◎ '90 학상 심사결과

'80 체력 학상내역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장려상	○ 급수 공사후 발생하는 환불절차 간소화 - 급수공사 완료후 발생하는 환불금을 신청인파 은행에	시장 표창 및 시상금 30만원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장려상	<p>환불봉지를 한 후 신청인이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 인출토록 하고 있어 금액에 비해(대부분 1,500원 이하) 복잡한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수공사 신청서 하단에 신청인의 예금구좌번호를 기재토록 하여 환불금 발생시 자동 입금조치하고 신청인에게 내역만 통지토록 하여 처리절차 간소화 · 착상자 :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주사 박진영 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행정주사 조두업 	<p>시장 표창 및 시상금 30만원</p>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공고문서 번호부여 및 문서보존방법 개선 - 기관별도 고시·공고문서 번호부여의 주관주사, 부여방법, 문서보존방법이 상이하여 업무의 일관성이 없는바 - 고시·공고번호 부여를 문서주관과로 통일하고 고시·공고를 구분 년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토록 하며, 문서보존방법을 통일업무의 일관성 유지 · 착상자 : 감사관 조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권영 	<p>시장 표창 및 시상금 30만원</p>
장려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론동 케이블노선 연결시 터미널 이용 집중 - 가론동 시설공사시 케이블 연결을 케이블 가닥끼리 서로 꼬아 접속하고 있어 접지사고등 사고발생시에는 전원공급구간내의 선로 연결부분을 대번 풀이 확인하고 재접속하고 있는바 - 시공시 케이블 연결부위에 터미널을 압착하고 터미널과 항동볼트로 연결되도록 하여 능률적인 접지사고 보수 및 보수에 따른 케이블 손실 방지 · 착상자 : 성북구 토목과 지방전기기사 강도석 	<p>시장 표창 및 시상금 30만원</p>
노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체육놀이 제기공 개발 -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오재미놀이들 혼합 응용한 제기공을 개발하여 배구경기와 유사한 현대식 경기방식 및 규칙을 제정 실내의 어느곳에서나 좁은 공간에서도 즐길 수 있는 놀이를 개발 사회체육 활성화 · 착상자 : 시민생활국 생활체육과 지방별정직7급상당 시 남근 지방별정직7급상당 김강영 	<p>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p>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노 령 상	○ 서울시 직원상조회 용자금 수령절차 개선 - 서울시 직원상조회의 용자금 수령시 신청자가 직접 상조회에서 상업은행 예금청구서를 수령 인출하고 있어 불편하므로 용자신청서에 봉급지급 통장계좌번호를 기입하여 무통장 입금 조치하고 신청자 소속기관에 통보토록 제도개선 · 착상자 : 성북구 성북1동 지방행정주사 김 중 현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노 령 상	○ 동상 신규임용상의 문제점 개선 -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장인 동장을 행정경험이 적은 각급 단체 경력자를 신규임용하고 있어 복잡한 업무추진에 무리가 있으므로 시보제도를 신설하고, 임용전의 실무교육과 기존동장의 보수교육을 제도화하여 업무추진능력 향상 · 착상자 : 강동구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김 재 환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노 령 상	○ 서울시 직원상조회 운영방법 개선 - 퇴직시 지급하는 상조회비가 소액으로 퇴직후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현재 직급별 정액제로 되어 있는 월회비를 기여금 불입방식과 같이 봉급과 연동시켜 정률제로 변경하거나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급금액 현실화 · 착상자 : 보건환경연구원 지방행정주사 이 종 택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노 령 상	○ 어린이 이용버스를 일반차량과 구별 - 유치원, 학원, 학교버스등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차량에 노란색을 칠하는등 다른 차량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이용차량에 대한 주의촉구 및 도시미관 제고 · 착 상 자 : 기획관리실 시정개발담당관 지방행정직7급상당 한 계 속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 '90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90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 접수 현황 ></p> <p>○ 접수기간 : '89. 9. 1 ~ '90. 8. 31</p>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 접수결과 : 128건 ('90년 접수 127건, '89년 심사유보 1건)</p> <p>< 심 사 결 과 ></p> <p>○ 체 락 — 9건 13명</p> <p>- 동 상 : 2건 5명 (공공제안 2건)</p> <p>- 장려상 : 3건 3명</p> </td> </tr> </table>			<p>◎ '90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90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 접수 현황 ></p> <p>○ 접수기간 : '89. 9. 1 ~ '90. 8. 31</p>	<p>○ 접수결과 : 128건 ('90년 접수 127건, '89년 심사유보 1건)</p> <p>< 심 사 결 과 ></p> <p>○ 체 락 — 9건 13명</p> <p>- 동 상 : 2건 5명 (공공제안 2건)</p> <p>- 장려상 : 3건 3명</p>
<p>◎ '90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90년도 공무원제안 심사결과 및 시상계획</p> <p>< 접수 현황 ></p> <p>○ 접수기간 : '89. 9. 1 ~ '90. 8. 31</p>	<p>○ 접수결과 : 128건 ('90년 접수 127건, '89년 심사유보 1건)</p> <p>< 심 사 결 과 ></p> <p>○ 체 락 — 9건 13명</p> <p>- 동 상 : 2건 5명 (공공제안 2건)</p> <p>- 장려상 : 3건 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상 : 4건 5명(공동제안 1건) ○ 불 채택 — 119건 < 시상 계획 > ○ 표 창 : 채택자 전원 시장표창 (9건 13명) ○ 부상금 지급 (제안규칙 제25조) - 동 상 : 1건당 150만원 - 장려상 : " 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력상 : 1건당 30만원 ○ 인사상 특전부여 (제안규칙 제23조, 제24조) - 동 상 - 7급이하(3명) : 특별승진 6급 (1명) : 승진시험 우선응시 우대 - 4급 (1명) : 특별승급 - 장려상 및 노력상(8명) : 특별승급
---	---

채택 제안 내역 (9 건)

채택등급	제 안 내 용	비 고
동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시설 현대화(자동화)를 위한 응집제 투입율식 연구제안 - 수원지에서 한강물을 정수하기 위하여 탁도시험후 응집제를 투입하므로 수질의 연속적인 변동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수질측정 및 약품투입등의 시설을 현대화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약품주입율식 연구 제안 * 투입율식 : $\{3.14 - (0.04 \times \text{온도})\} \times \text{알카리도} 0.21 \times \text{탁도} 0.36$ - 효 과 : 적절한 응집제 투입으로 상수도수질 향상 및 예산절감 - 제안자 : 탄천하수처리장 지방화공기사보 김인자 성동구 환경과 지방화공기원 김경무 상수도본부수도연구소 지방화공기원 김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표창 및 부상 150만원 지급 ○ 인사상 특전 : 특별승진
동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침전지 설비개량에 의한 하수처리량 증대 - 탄천하수처리장은 1일 5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도록 설비되었으나 하수유입량이 증가되고 있어 최종침전지의 유효웨어를 30m 높이고 수로물 증설하여 포기조와 최종침전지간의 수위차를 극소화하여 처리량 증대 - 효과 : 하수처리능력 증대(약 10만톤)에 따른 예산절감 - 제안자 : 중랑하수처리장 지방공업기정 박 창 진 환경 과 지방화공기사 합 점 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표창 및 부상 150만원 지급 ○ 인사상 특전 - 6급 : 승진시험 우선응시 - 4급 : 특별승급

채택등급	제 안 내 용	비 고
장 려 상	<p>○ 수문 및 가동웨어의 SLIDE수밀부 개선안</p> <p>- 현재의 수문은 문틀과 서로 경사를 이룬 웨기를 위에 서 아래로 이동시키는 형태로 상대의 수압에 의거 밀착시키고 있어 물이 새어나가고 웨기부에 이물질이 끼기쉬워 작동이 곤란한 사례가 발생하므로 수문의 4곳에 특수롤러와 판스프링을 설치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개선</p> <p>-효 과: 완벽한 물방조필 가능 및 관리용이</p> <p>-제안자: 종합건설본부 설비부 지방토목기사 김윤수</p>	<p>○ 시장표창 및 부상 50만원 지급</p> <p>○ 인사상 특전 : 특별승급</p>
장 려 상	<p>○ 자동차 취득세업무물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등록시 고지서 발급</p> <p>- 자동차 취득자가 자동차관리사업소에 등록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3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을 등록시 입력된 자료에 의거 전산으로 고지서작성 등록과 동시 교부</p> <p>-효 과: 시민불편 해소 및 인력, 예산 절감</p> <p>-제안자: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주사 이인선</p>	<p>○ 시장표창 및 부상 50만원 지급</p> <p>○ 인사상 특전 : 특별승급</p>
장 려 상	<p>○ 건축공사에 따른 공공시설물 보호대책</p> <p>- 건축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점용면적, 기간등을 건축규모에 비례하도록 산출방법을 조정하고 도로시설물 손괴시 복구비를 건축과(건축감리자 포함)에서 추정하여 시선헌리부서로 봉보토록 개선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사무분장규칙, 공사현장원복부 규정등에 명시</p> <p>-효 과: 공공시설물 훼손시 복구비를 징수 즉시 보수로 시민불편 해소</p> <p>-제안자: 지하철건설본부공사1부 지방토목기원 한광석</p>	<p>○ 시장표창 및 부상 50만원 지급</p> <p>○ 인사상 특전 : 특별승급</p>
노 려 상	<p>○ 무허가건물 확인원서 발급제도 개선</p> <p>- 무허가건물 확인원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현존하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 신청내용, 사용용도등을 수작업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무허가건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증명원 발급신청시 복사발급</p> <p>-효 과: 신속한 증명발급 및 소유자변동 확인 용이</p> <p>-제안자: 성북구 돈암2동 지방행정서기보 유복열</p>	<p>○ 시장표창 및 부상 30만원 지급</p> <p>○ 인사상 특전 : 특별승급</p>

채택등급	제 안 내 용	비 고
노 령 상	<p>○ 자동차 등록세고지 및 소인업무 자동화</p> <p>-자동차의 신규, 이전등록시 등록세고지서를 수작업으로 작성 발부하고 영수증등의 위조방지를 위하여 4중으로 소인하고 있는 것을 등록시 입력된 자료를 활용 전산고지 및 자동소인트록 개선</p> <p>-효 과 : 신속한 처리로 시민불편해소 및 인력절감, 세입증대기여</p> <p>-제안자 : 자동차관리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김 상 하</p>	<p>○ 시장표창 및 부상 30만원 지급</p> <p>○ 인사상 특전 : 특별승급</p>
노 령 상	<p>○ 택지취득허가신청과 토지거래허가신청 동시처리</p> <p>-택지를 구입하고자할 때 택지소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취득허가를 득한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는등 이중신고하는 것을 동시 처리로 개선</p> <p>-효 과 :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력 감축</p> <p>-제안자 : 관악구 토서관리과 지방행정주사오 락 설 곤</p>	"
노 령 상	<p>○ 지하수 계측용 시간제 개선안</p> <p>-지하수 사용자의 사용량 계측을 위한 시간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구입시 기물번호를 탐주부서에서 결정 기재토록하고 취부용 고리를 스테인레스로, 전원 연결 분트와 전선사이에 철판을 삽입등으로 개선</p> <p>-효 과 : 요금조정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p> <p>-제안자 : 도봉구 하수과 지방전기기사 이 병 목, 전 기 장 김 근 영</p>	"
<p>● '90 채택 시민창안 심사결과</p> <p>'90년도 채택 시민창안 내역</p>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금 상	<p>○ 신호등에 고유번호 부착</p> <p>- 시내의 짧은 가로들 연장 정렬하여 88도로, 99번 도로 등과 같이 가로번호를 추가로 부여하고 가로번호와 신호등 일련번호를 합쳐 신호등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효과적인 길안내 및 교통방송시 정확한 위치설명이 가능하도록 함</p> <p>-제안자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47-117 윤 병 규</p>	<p>시장 표창 및 시상금 200만원</p>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은 상	○ 시내버스 안내판에 차량진행방향 표시장치 개발 - 버스노선 안내판에 차량진행방향 표시장치를 부착하여 이용시민들에게 편의제공 - 제 안 자 :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31번지 신 원 남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0만원
동 상	○ 대형차량 뒷편에 차량번호를 대형으로 표시 - 대형화물차, 덤프트럭, 버스등 대형차량의 뒷편에 차량번호를 크게 표시하여 운전자의 난폭운행을 시민들이 감시하도록 함 - 제 안 자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상용APT 3동 302호 전 덕 규	시장 표창 및 시상금 50만원
장 려 상	○ 차량감속 유도요철 브릭개발 - 차량감속, 제한구역(아파트단지, 주거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로, 세로 36cm, 두께 12cm의 특수요철 브릭을 개발 시범하여 운전자와 승차인의 불편해소는 물론 소형운반구, 자전거, 리어카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함 - 제 안 자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9 강 해 용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 려 상	○ 지하철 추가 전선구간 유도등 시공방안 - 지하철 추가노선 및 신규노선의 피난구 유도등을 3선식으로 배선 시공하여 평시에는 조명 등에 의해 승객을 유도하고, 정전 및 화재발생시에는 자동으로 유도등이 점등되어 승객을 유도하도록 하여 에너지 및 유지관리비 절약 - 제 안 자 : 서울시 강동구 암사2동 513-12 김 효 선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장 려 상	○ 쓰레기 수거 및 운송 개선방안 - 쓰레기 수거용 소형트럭과 적재함을 개발하여 가정쓰레기를 문전수거와 동시 압축 적재하여 최종 매립장으로 직송토록 함으로써 효율적 쓰레기 처리 및 예산절감 ○ 제 안 자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23 대흥빌딩 405호 김 학 태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채택동급	제 목	비 고
장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선로 트랜스를 주축으로 한 유도무선 다중방송 증대장치 개발 - 전자파의 불감지대인 지하터널, 지하구조물 혹은 지상의 특수구조물에서 AM, FM방송을 손쉽게 청취할 수 있도록 전송선로 트랜스를 이용한 유도무선 다중방송 수신장치 개발 - 제 안 자 :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3가 29-13 김 병 기 	시장 표창 및 시상금 10만원
노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차량 족쇄제도 도입 - 경찰 족쇄반을 편성하여 불법 주·정차 발견시 즉시 바퀴에 족쇄를 채우고 안내문을 부착 일정금액을 납부 후 풀어주도록 하여 신속하게 불법 주·정차 단속 - 제 안 자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150번지 올림픽해미티 APT 228-1201 한 명 수 	시장 표창 및 기념품 수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약국의 동시 휴무 개선안 - 일정지역 약국들을 소편성하여 휴일제로 휴무하도록 하고, 휴무하는 약국은 휴무하지 않는 인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 개칭 이용 시권권의 도모 - 제 안 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316-24 류 광 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차량에 무전기 설치 - 시내의 영업용 차량에 무전기를 부착하여 주행중 각종 범죄나 시설물 파손등 신고사항 발견즉시 경찰서, 병원, 행정기관등에 신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제 안 자 : 대전시 동구 소제동 282-11 양 일 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역사내 공기오염 방지안 - 지하철 입구와 계단등에 승객들의 신발에 들어있는 흙먼지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물(빗살형, 용수결형, 칫솔형등)을 설치하여 지하철 역사내 공기오염을 방지 - 제 안 자 :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692-15 삼성주백 302 고 덕 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널통행료 징수방법 개선방안 - 유료도로를 모두 무료화 하되, 유료시 예상수익금을 전체차량에 균등하게 부담시키도록 하거나, -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여 때월달 또는 때분기말에 일괄후납토록 하여 차량 정체현상 해소 - 제 안 자 : 서울시 성북구 삼선1가 150번지 김 주 득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노 령 상	○ 영등포 로타리 교통소통 해결방안 -영등포역앞 로타리의 차량진행방향과 신호체계를 일부 변경 일방통행제로 하여 교통정체현상 해소 -제 안 자 : 서울시 노원구 광릉동 172 안 상 우	시장 표창 및 기념품 수여
"	○ 중랑천변 고속화도로 개설시 중랑천내 토사사용 -중랑천변 고속화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사를 하천정비도 할경 중랑천내의 토사활동 예산 절약 -제 안 자 :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28-228 유 경 준 ○ 차선구분선 간격개선 -차선구분선 간격을 3.4m에서 5.6m 이상으로 페인트를 칠하여 예산절감 -제 안 자 : 서울시 성북구 종암2동 28-228 유 경 준	"
"	○ 지하철내 입석승객을 위한 손잡이 설치 -단원전철내의 입석승객을 위해 지하철 풍로가운데에 손잡이 두릅을 더 설치하여 출·퇴근시 등 혼잡한 시간에 이용하도록 하여 입석승객의 편의 도모 -제 안 자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871-30 박 경 립	"
"	○ 지하철공사 예산절감 및 노사문제 해결방안 -지하철공사의 대표원 등 비교적 단순노무직을 정년퇴직자나 부녀자 고용 인건비 절약 -제 안 자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295-9 김 유 황	"
"	○ 초보운전표시 고안 -초보운전자 표시를 통일하여 귀중한 생명과 안전을 상징하는 도안 고안 사용 -제 안 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27-5 삼익빌라 303호 배 율 출	"
"	○ 지역 재개발조합 정관 개선 -지역재개발 조합성관 지침을 변경 참여 조합원(세입자)에게도 경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정조합원의 조합경비 부과방법도 소유도지 평가액에 따른 부과방법에서 입주예정 아파트 평수(관리처분계획)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여 조합비(경비) 부과방법을 개선 -제 안 자 : 서울시 중구 신당6동 57 현대APT 3동1003호 환관섭 서울시 중구 신당6동 57 현대APT 4동 1304호 양봉길	"

채택등급	제 목	비 고
노 령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료보험의 자격관리 개선 및 정수를 제고방안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인식표를 부착하여 지역의료보험 적용대상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퇴거시 피보험자 자격상실 확인서를 발급하여 전입과 동시 보험적용 대상자가 되도록 하며 의료보험 고지서에 수혜대상, 보험료 산정기준등을 기재 홍보하도록 함 - 제 안 자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63-6 조 창 호 	시장 표창 및 기념품 수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터널 조명등 설비 개선안 - 지하철 터널입구에 인입접속 전원차단 장치를 설치하여 스위치에 의해 점등 보수등 필요시에만 점등토록 하여 에너지 절감 - 제 안 자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1-9 잠실한신코아APT 1431호 백 승 열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개찰구의 개찰기 개선 - 지하철 개찰기의 삼입구를 반원형으로 하여 승차권 삼입이 잘 되도록 개선 - 제 안 자 : 서울시 송파구 잠실5동 주공APT 520-303 배 재 만 	"